
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|---|----|
|  | 보 도 자 료 | | |
| | 보고 | 2020. 9. 29.(화) 석간 | 배포 |
| 담당부서 | 회계관리국 | 이재훈 팀장(3145-7970), 임창주 전문감독관(3145-7973) | |

제 목 :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

【 분석 요약 】

- ◆ (분석 결과)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,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비율은 2.5%*로 전기 내부회계 검토 결과 비적정의견 비율(1.9%) 대비 소폭 증가(0.6%p ↑)
 - *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표명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사 중 156사는 적정의견이, 4사는 비적정의견(중요한 취약점 발견)이 표명됨
 - 당초 인증절차 강화(검토→감사)로 비적정의견 비율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,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풍부한 물적·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내부회계 감사를 준비한 것으로 평가
- ◆ (시사점)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의 단계적 확대*에 따라 가용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상장법인이 감사대상으로 편입되는 '20회계연도 이후 부터는 비적정의견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* 5천억원 이상('20년), 1천억원 이상~5천억원 미만('22년), 1천억원 미만('23년)
 - ⇒ 내부회계 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금감원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(한공회, 상장협·코협, 회계법인 등)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내부회계 관련 FAQ 및 교육컨텐츠 확대 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
 - 한편,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도로 표명되는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갖는 정보효과*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
 - *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경우, '회사의 現내부회계는 향후에 작성될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'을 의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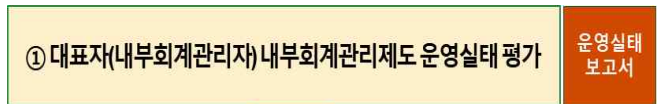
I 개요

- (배경) 내부회계관리제도(이하, 내부회계)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
 - 상장법인은 외감법에 따라 '05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'검토'를 받아 왔으며, 新외감법 시행으로 '19회계연도부터 인증절차가 강화되어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*으로 '감사'를 받는 것으로 전환
 - * 2조원 이상('19년), 2조원~5천억원('20년), 5천억원~1천억원('22년), 1천억원 미만('23년)
- (분석대상) 인증절차 강화(검토→감사) 후 내부회계 감사가 첫 시행된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(160사)을 대상으로 '19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및 중요 취약점 유형을 분석하고
 - 제도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실무이슈 등을 점검하여 내부회계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사점 및 유의사항을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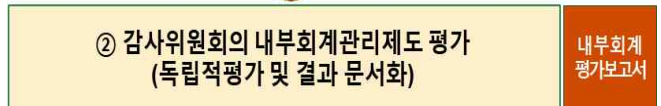
<참고>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감사 체계

◆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감사는

①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(설계·운영·평가·보고)



② 감사(위원회)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



③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표명 등



→ 3단계로 진행됨

1

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감사의견 현황

- (의견현황)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'19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적정의견 비율은 97.5%임
-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표명된 상장법인 160사 중 156사는 적정의견을, 4사는 비적정의견(중요한 취약점 발견)을 받음
 - 비적정의견을 받은 4사 중 2사는 전기(검토의견)에도 중요한 취약점 발견을 사유로 비적정의견을 받음

◆ 중요한 취약점(MW : Material Weakness)

- ※ 외부감사인은 중요한 취약점을 내부회계 감사의견에 포함하여 의견을 표명
- 하나 또는 복수의 통제미비점의 결합으로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 또는 적시에 적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
- 중요한 취약점 발견 시 회사의 내부회계를 효과적이라고 결론내릴 수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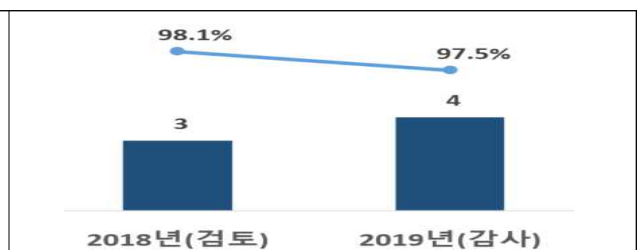
- (의견추세) 당초 인증절차 강화(검토→감사)로 비적정의견 비율*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, 내부회계 감사 결과 적정의견 비율(97.5%)은 전기 검토 결과 적정의견 비율(98.1%)과 유사한 수준

* 2조원 이상 상장법인 적정의견 비중 : '18년 98.1%(검토의견), '19년 97.5%(감사의견)

- 이는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 대부분이 내부회계 감사에 대비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내부회계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·물적 인프라를 갖춘 것에 기인

2조원 이상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(검토)의견 현황

| 구 분 | 2018년(검토) | 2019년(감사)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적정(취약점 X) (비율) | 157 (98.1) | 156 (97.5) |
| 비적정(취약점 O) | 3 | 4 |
| 합 계 | 160 | 160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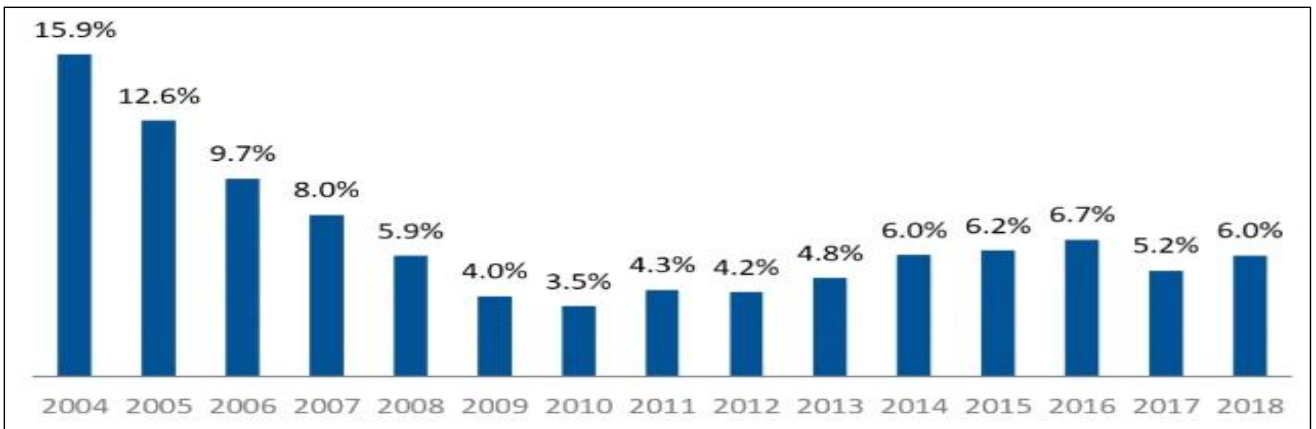


□ **(미국 사례 비교)** 미국의 경우 내부회계 감사가 도입된 첫 해('04회계연도)의 비적정의견 비율이 15.7%에 달하였고, 최근 5년간 비적정의견 평균비율도 6.0%로 높은 수준

○ 다만, 우리는 인적·물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대형 상장법인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미국 사례와 단순 비교는 무리

- 향후 중소형 상장법인으로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경우,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

美상장법인 내부회계에 대한 비적정 감사의견 비율 추세



2

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평가 현황

□ **(평가현황)** 분석대상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위원회 평가의견을 분석한 결과,

○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사 중 159사는 중요한 취약점 없이 내부회계가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평가

- 외부감사인인 내부회계에 대해 비적정의견(중요한 취약점 발견)을 표명한 회사(4사)의 경우에는, 감사위원회 평가보고서에서 1사만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

3

중요한 취약점 유형

- (중요한 취약점)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4사는 손상인식, 리스회계, 총당부채 측정, 금융상품 회계처리 등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와 관련한 통제미비점을 중요한 취약점으로 공시
 - 이는 내부회계 모범규준에서 '최초 재무제표에 미반영된 수정 사항'과 '전기오류'를 중요한 취약점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에 기인

비적정의견 사유 : 중요한 취약점

| 구분 | 유형 | 세부내역 |
|------------|----|---|
| 중요한 취약점 | 손상 | - 현금창출단위의 자산 손상 관련 -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손상 관련 |
| | 리스 | - 리스 회계처리 관련 |
| | 기타 | - 종업원(단체)과 체결한 약정사항 인식 관련 -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정확성 검토 관련 - 소송총당부채의 측정 관련 - 항공기 정비비용(유형자산, 미지급비용) 인식 관련 |

- (미국 사례 비교) 우리나라는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와 관련한 통제미비점만을 중요한 취약점으로 공시한 반면,
 - 미국의 경우 내부통제환경 구축 미흡, 회계인력이나 경영진의 전문성 미비 등 내부통제의 본질적 요소와 관련된 사유로 비적정의견을 받은 회사가 약 60% 수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
 - 이는 결산 관련 통제 취약점 발견 시 이와 연관된 본질적 통제 요소(통제환경, 회계역량, 업무분장 등)의 취약점까지 치유되어야 한다는 Top-Down 평가방식을 적용한 것에 기인

美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사유 및 비중('18회계연도 기준)

| 비적정의견 사유(중요한 취약점) | 회사 수 | 비중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재무제표 작성·공시 관련 프로세스 통제 취약 | 180사 | 36.8% |
| 내부통제 환경 구축 미흡 | 288사 | 58.8% |
| 내부감사 미비 | 10사 | 2.0% |
| 경영진의 전문성 등 취약 | 5사 | 1.0% |
| 기타 | 7사 | 1.4% |
| 합 계 | 490사 | 100.0% |

4

재무제표 감사와의 관계

- '19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대상인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경우, 내부회계 비적정의견을 받은 4사를 포함한 160사 모두 재무제표 감사에서는 적정의견이 표명됨
- 재무제표 감사 시 발견한 결산오류 등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수정 반영된 경우,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 표명되나,
 - 동 결산오류가 내부회계 모범기준에 따라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된 경우 내부회계 감사의견은 비적정의견이 표명됨
- 재무제표 감사의견과는 별개로 내부회계 감사의견에서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경우, '회사의 現내부회계는 향후에 작성될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함'을 의미

III

시사점 및 유의사항

① 감사(위원회)는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 평가 필요

- 회사의 감사(위원회)는 경영진이 실시한 평가 절차와 운영실태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감독자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문서화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나,
 - '19회계연도에 내부회계 감사를 받은 상장법인 대부분*은 경영진의 운영실태 평가와 동일한 취지의 감사위원회 평가의견을 공시
 - * 외부감사인인 비적정의견을 표명한 4사 중 1사만 감사위원회 평가의견이 비적정 (나머지 3사의 감사위원회 평가의견은 적정)
 - 한편, 금감원 설문조사* 결과 대형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 직할부서를 통해 평가를 지원하는 회사는 37.1%로 낮은 수준
 - * 설문조사 결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05사 중 39사(37.1%)가 감사위원회 직할부서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평가를 지원하고 있다고 회신

➔ 감사(위원회)의 내부회계 평가는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, 평가업무 수행 시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거쳐 내부회계에 대한 평가의견을 형성할 필요

② 내부회계 주요 취약점은 재무제표 오류 또는 결산통제에 편중

-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4사의 경우,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와 관련한 통제미비점만을 중요한 취약점으로 공시
- 미국의 경우 내부통제환경 구축 미흡, 회계인력이나 경영진의 전문성 미비 등 내부통제의 본질적 요소와 관련된 사유로 비적정의견을 받은 회사가 약 60% 수준(18회계연도)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

➔ 내부회계의 목적 및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, 회사와 감사인 모두 결산통제에 대한 취약점 발견 시 이와 연관된 내부회계의 본질적 요소(통제환경, 회계역량 등)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보고 평가할 필요

③ 정보이용자는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갖는 정보효과에 유의할 필요

- 내부회계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 산출과정에 대한 내부통제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
-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과는 별개로 내부회계 감사의견에 중요한 취약점*이 포함되어 감사의견이 변형된 경우,

* 회사의 現내부회계는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함

- 정보이용자는 중요한 취약점의 의미와 회사가 공시*한 중요한 취약점의 원인, 개선계획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에 유의할 필요

* 회사는 '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'에 중요한 취약점의 원인·개선계획·이행결과 등을 포함하여 공시

➔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도로 표명되는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갖는 정보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

④ 감독당국은 내부회계 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지속

-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비율은 2.5%*로 다소 낮은 수준

* 미국은 내부회계 감사가 도입된 직후인 '04회계연도에 ICFR에 대한 비적정의견 비율이 15.7%에 달하였고, 최근 5년간 비적정의견 평균비율은 6.0% 수준

- 대형 상장법인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·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내부회계 감사를 준비한 것으로 평가
- 반면, 가용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상장법인이 내부회계 감사대상으로 편입되는 '20회계연도 이후부터는 비적정의견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

➔ 내부회계 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금감원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(한공회, 상장협·코협, 회계법인 등)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지원방안*을 모색할 예정

* 내부회계 관련 FAQ 및 경영진 대상 교육컨텐츠 확대 제공, 정보공유 확대 등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□ 상장법인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검증이 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'19년부터 순차적으로 '검토'에서 '감사'로 전환*

* 감사의무화 시점 : '19회계연도(직전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이상) → '20년(5천억원~2조 원) → '22년(1천억원~5천억원) → '23년(1천억원미만)

○ **(검증대상)** '검토'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점검하고, 그 결과를 보고한 **운영실태보고서***를 대상으로 주로 검증을 실시하지만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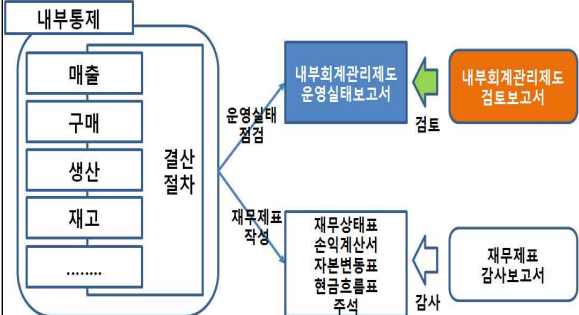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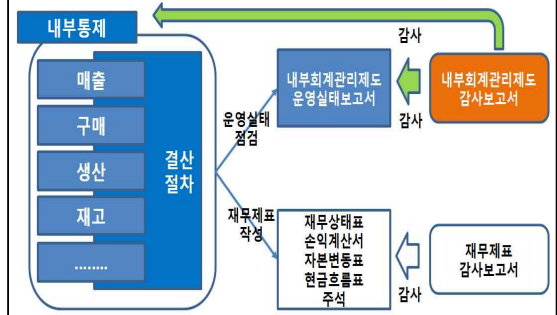
* 점검결과, 미비점 및 시정계획, 직전년도 시정조치 이행결과 등이 포함

- '감사'는 운영실태보고서 외에도 매출, 구매, 생산 등 주된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(설계와 운영)를 검증함에 따라 검증대상이 크게 확대

○ **(수행절차)** '검토'는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담당자와의 질문 위주의 검증절차를 수행하는 반면,

- '감사'는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회사가 작성한 문서를 검사하고 중요한 통제활동에 대하여 재수행하거나 회사의 통제활동을 현장에서 관찰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절차 수행

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·감사 비교

| | 검 토 | 감 사 |
|--------------|--|---|
| 검증 대상 | <p>대표이사의 운영실태보고서</p>  | <p>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(대표이사의 운영실태보고서 포함)</p>  |
| 수행 절차 | <p>질문 위주 (또는 제한된 수준의 문서검사)</p> | <p>통제절차의 재수행, 문서검사, 관찰, 질문</p> |